고객확인업무 지침서

개정 이력

일자	내 용	작성자	승인자
2024.01.01	• 개정	김작성	이승인
2024.07.29			

Contents

고객확인 의무

- 1. 고객확인 대상 고객, 대상 거래, 고객확인 시기
- 2. 고객확인 의무의 구성
- 3. 고객수용 정책
- 4. 고객확인 일반
- 5. 개인고객의 확인 및 검증

- 6. 간소화된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 7. 실제소유자
- 8.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고객
- 9. 별지서식

고객확인 요건

FIU 업무 규정상 관련 조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실제 소유자 확인, 거래목적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oFIU 업무규정 제37조 (원칙)

-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법인 및 단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신탁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법인·단체'이라 한다] 고객에 대해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지배구조 및 통제구조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KoFIU 업무규정 제38조 (신원확인)

- ①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및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 3. 실명번호
 - 4.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5.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6.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단체)명
 - 2. 실명번호
 -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4.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항
 - 5. 업종(영리법인인경우), 회사 연락처
 -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경우)
 - 7.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 ③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등은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요건

FIU 업무 규정상 관련 조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실제 소유자 확인, 거래목적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KoFIU 업무규정 제39조 (개인고객의 검증 등)

- ①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 3. 실명번호
 -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5.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③ 금융회사등은 개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oFIU 업무규정 제40조 (법인·단체 고객의 검증 등)

- ①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단체)명
 - 2. 실명번호
 -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4. 업종(영리법인인경우)
 - 5.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경우)
- ② 금융회사등은법인·단체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해 제20조제2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 (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③ 금융회사등은법인·단체 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요건

FIU 업무 규정상 관련 조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실제 소유자 확인. 거래목적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oFIU 업무규정 제41조 (실제당사자)

-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대표자"는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인·단체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직책에 있는 자연인 등을 말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FIU 업무규정 제42조 (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2. 거래의 목적
 - 3. 거래자금의원천
 - 4.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③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 2. 거래자금의 원천
 - 3. 거래의 목적
 - 4.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 ④ 금융회사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적용 대상 및 이행 시기

(규정 32조, 내규 37조에 의거) 고객확인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이나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객 구분	시기 구분	시 기 (세부)
신규 고객	계좌 개설 전 고객확인	• 계좌의 신규 개설 시 (신규 회원 가입 시) -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은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즉 회원 가입 후 최초 금융 거래 전에 수행
		•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시
	-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 고객확인 • 고객확인자료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저위험 상품 및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의	- 고객의 주요 정보(성명, 실명번호, 국적 등)의 변경을 알게 되었을 때 -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기존 고객		• 고객확인자료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저위험 상품 및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로의 변경 또는 추가 계약하는 경우 등
		• 자금세탁으로의심되는 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등의우려가 높은 거래 발생 시

계좌의 신규 개설

계좌의 신규 개설의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KoFIU 업무규정 제22조 (계좌 신규 개설)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 2.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 3.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4. 펀드 신규 가입
- 5.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 6.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계약을 체결하는 것

"계좌의 신규 개설"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존에 회사와 아무런 사업관계나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고객과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금융거래란 특금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바를 충족하는 거래입니다.

또한 계좌의 신규개설은 반드시 "계좌"로 그 개념을 한정지을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사업관계, 새로운 계약관계의 수립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좌의 신규 개설

계좌의 신규 개설의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계좌의 신규개설로 볼 수 없는 경우

- 1. 기존계좌가 개설된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 2.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전(前) 기존 계좌를 가지고 있던 고객이 기존 근거계좌와 연결되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연결계좌개설)

연결계좌의 개설의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 재이행주기가 넘어간 고객
- 2.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 3.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4.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 5. 계좌 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6.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 ** 1.2번: 특금법시행령제 10조의6제3항
- ** 3,4,5,6번: FIU업무규정제 25조제2항
- **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집(2024), p8

고객확인 재이행주기에 따르는 고객확인

점검 주기에 따른 고객확인은 계속적 거래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합니다. 재이행주기는 고객의 위험도 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위험 등급	재이행 주기	설 명
• 저/중 위험 고객	• 3년	•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낮은 고객
• 고위험 고객	• 1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객 당연 고위험 고객 포함

고객 불편 및 고객확인 재이행으로 인한 민원 관리

- 지속적인 고객확인시 갑작스러운 고객확인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프로그램을 운영
 -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1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
 - . 방법
 - □ Homepage/Mobile App 등에 로그인 시 고객확인 대상임을 안내
 - □ 이메일 발송
 - □ 카카오 톡 등 SMS 활용
 - 내용
 - □ 고객확인 제도 재이행에 대한 설명 (근거 법, 제도의 목적 및 취지 등)
 - □ 비협조 시 금융 거래 제한 등 불이익 사항
 - □ 마감 일시
 - □ 마감 경과 시 발생할 불이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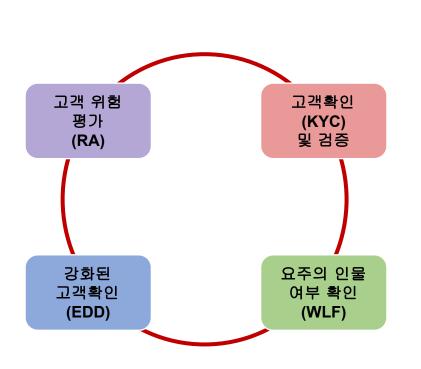
자금세탁 의심 거래, 고객정보 불일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고객확인 정보 불일치 확인 방법
배경	배경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고객확인 사항 뿐만 아니라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확인 등을 이행합니다.	 고객확인을 마친 고객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합니다.
유형	방법
●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각 금융사 별로 자사의 사업 모델에 비추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수 있을만한 유형들을 명기 합니다. (팁: STR 룰 시나리오 중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1번 과 같은 형태로 서술) ■ 전	 고객은 자신의 신원 정보를 회사에서 인정한 방식으로 제출하고 고객확인 담당자는 접수합니다. (신원 확인 행위) 1. 웹(홈페이지) 또는 앱 등의 신원확인 정보 수집 페이지를 통한 방법 2. 가맹점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의 양식을 다운받아 고객이 직접 작성 후 fax 또는 이메일 등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하는 방법 등 • 위 1번에 의해 징구한 신원확인 자료와 검증자료를 대조하는 검증 행위를 통해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구성 및 고객구분

고객 확인(CDD)의 구성

위험평가 등급에 따른 고객 구분



CDD 모든 고객 대상 CDD 항목의 확인 및 검증 **EDD** SDD 모든 고객 중 저위험 고객 신원확인은 이행해야 + 추가정보

고객확인 구성

고객확인의무의 구성

고객확인의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모든 절차를 해당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행합니다.

	이행 내용	설명
고객 위험평가	• 고객위험, 거래채널, 거래상품 등 위험평가요인 (Risk Factor) 에 기반하여 자금세탁위험평가	• Risk Factor 특성에 따라 다양한 <u>위험요인을 세분화 &</u> 구성한 위험평가 모델로 평가
고객 신원확인 (CDD 확인)	• 모든 고객으로부터 업무규정 제38조 제1항과 제2항에 정의된 항목 등을 수집	• 개인 고객의 경우에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직업 등 신원확인정보를 수집
고객 신원 검증 (CDD 검증)	 수집한 신원확인 정보 중 검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재차 확인 (검증) 	• 고객이 계좌개설 신청서, 가맹점 계약서 등의 형태로 회사에 제출한 자신의 신원 정보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 (에 준하는 문서) 등과 비교하여 그 정확성 또는 사실 여부를 체크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
실제소유자 확인	•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소유자) 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 실제소유자확인은 <u>개인에 대하여도 모두 필수 사항</u>
요주의 리스트 확인 (WLF)	고객과 Sanction List를 비교하여 제재 대상자를 filtering Sanction List 종류: 금융위 고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UN 발표 테러리스트, 외국의 정치적주요인물등	• 요주의 리스트에 매칭된 경우, Sanction list의 성격에 따라 내부 승인 후 거래 개시/유지 또는 거래거절/STR여부 검토
추가정보 수집 (EDD 수집)	 고객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되거나, 의심스러운 고객에 대하여 기본 고객정보 외의 추가 정보를 수집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및 출처 등을 파악하며, 추가적으로 개인의 경우 직장정보, 법인의 경우 운영 및 활동정보 등 추가 수집 	 강화된 고객확인(EDD)에 해당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나,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위험 평가 전, CDD 확인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다.

고객확인 구성

위험등급별 고객확인

(일반적인) 고객확인 (CDD: Customer Due Diligence), 간소화된 고객확인 (SDD: Simplifi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EDD: Enhanced Due Diligence)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 합니다.

구분	대상	설명
CDD	모든 고객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에 대하여 이행합니다. 다만, SDD와 ED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따릅니다. 일반고객들에 대해서는 SDD 적용하지 아니하고 CDD를 적용합니다. 실제소유자 파악
SDD	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 저위험 고객 - 저위험 상품 및 서비스	CDD의 절차와 방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DD 적용 예외 : 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 확인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EDD	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 고위험 고객 -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	(업무규정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41조부터 제42조 및 제4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추가확인정보의범위 (제42조) - EDD 상세 부분 참조 2. 환거래 사업자 (이하 제4장) 3. 종합자산관리서비스고객 4.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고객 공지

고객확인 담당자는 아래 표에 의한 고객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여야 합니다.

FIU 업무규정 제36조 (고객공지의무)	공지문 예시
① 금융회사등은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내규 41조에 의거 고객에게 공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의5(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따라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고객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정보·문서·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고객확인을 위한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검증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등이 거절 또는 종료됩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 및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취하는 조치 등	동법 시행령에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험 등급에 따른 고객 수용

고객 위험 등급별 고객 수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등급	고객 수용여부	간소화된 고객확인	신원 확인	신원 검증	추가정보 확인
		SDD	CDD		EDD
(당연)* 초 고위험	X	N/A	N/A	N/A	N/A
(당연) 고위험	0	N/A	0	0	0
(RA)** 고위험	0	N/A	0	0	0
중위험	0	N/A	0	0	N/A
(RA) 저위험	0	N/A	0	0	N/A
(당연) 저위험	0	0	0	N/A	N/A

- 당연*:회사의 위험평가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세탁관련법규 또는 당국의 가이드 등에 의해 고위험/저위험으로 분류되는 고객
- RA**: 회사의 위험평가 결과에 의하여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분류되는 고객

거래 거절 및 종료 - 법령 상의 요구사항

고객수용정책과 관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관련 법령 개정안 및 FTAF 권고사항 상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 법령 요구사항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특정금융 정보법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 생략)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u>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u>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테러자금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u>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領收)</u>
금지법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u>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u>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u>
	권고사항 10 고객확인의무
FATF 권고사항	• 금융회사가위의(a)-(d)의 조항에 해당하는 <u>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적용범위가 적절하게 조절 가능) 계좌개설,</u> 거래관계수립 또는 거래이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수립된 거래관계는 종결 지어야 하며, 해당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 거절 및 종료 - 대상 고객

고객확인 담당자는 아래 표에 의한 고객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여야 합니다.

신규 고객 (거래 거절)

신규고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과 거래를 거절합니다.

- 1. <mark>회사(고객확인업무담당자)</mark>가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요구하였을 때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
- 2. 당연 고위험 대상자(고객위험평가 지침서 참조) 중 다음 각 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가.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 다.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
 - 라. FATF 지정 위험 국가의 국민 또는 법인 및 단체
 - 마.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 바.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사.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이용 고객
 - 아. 환거래 서비스 이용 고객

기존 고객 (거래 종료)

기존고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과 거래를 종료합니다.

- 1.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시, 위험등급의 변경,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mark>회사(고객확인업무담당자)</mark>가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요구하였을 때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
- 2. WLF 결과 거래 거절 대상고객으로 변경된 경우

※ 거래를 종료할때에라도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거래대금을 지금하기 전 반드시 고객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 지급합니다.

거래 거절 및 종료 -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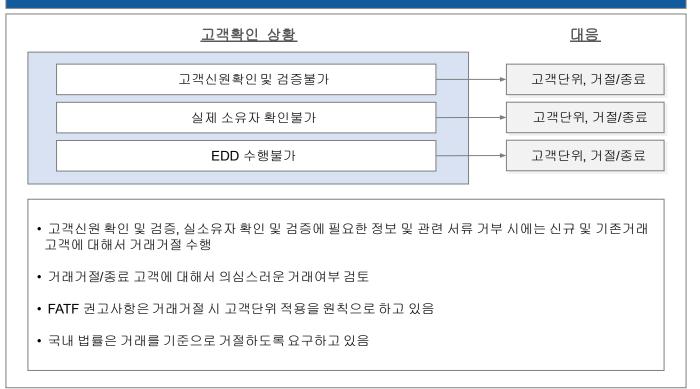
고객확인 요청에 고객의 비협조로 고객확인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해당 고객과는 거래를 거절(신규고객일 경우)하거나 종료(기존 고객일 경우)합니다. 이 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1. 고객 담당자는 <mark>별지서식 제 xx호</mark> (고객확인 정보 제공 비협조 고객 관리 대장)와 <mark>별지 서식 제 xx호</mark> (고객확인 정보 제공 비협조 고객 상세 내역)에 그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2. 보고책임자는 해당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STR담당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STR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완료된 보고서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거래 거절 및 종료의 요건 - 신원확인 및 검증

고객 확인 상황 별 거래 거절(신규 고객) 및 종료(기존 고객)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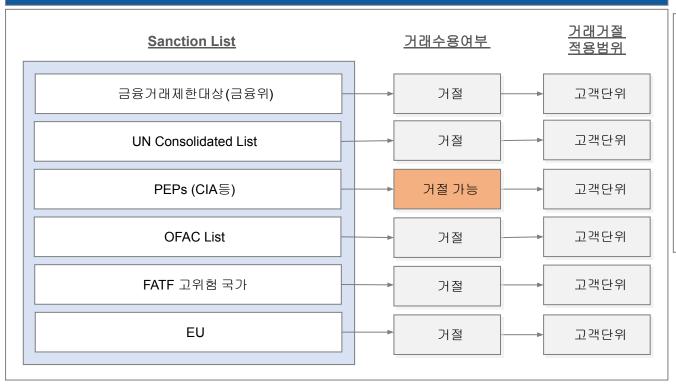




거래 거절 및 종료의 요건 - WLF

WLF Sanction List별 거래 수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LF 지침서를 참조바랍니다.

거래여부 및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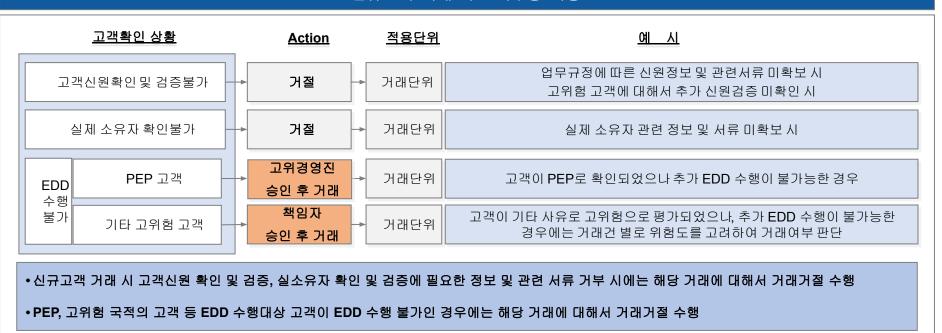


- W/L 중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인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 <u>정보누설 금지</u>,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업무 취급금지
-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인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지정되어 고시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단위로 거래거절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UN Consolidated List 및 OFAC List 에 대해서는 거래거절 관련 규정이 없으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래거절로 정함

신규고객 거래 시 고객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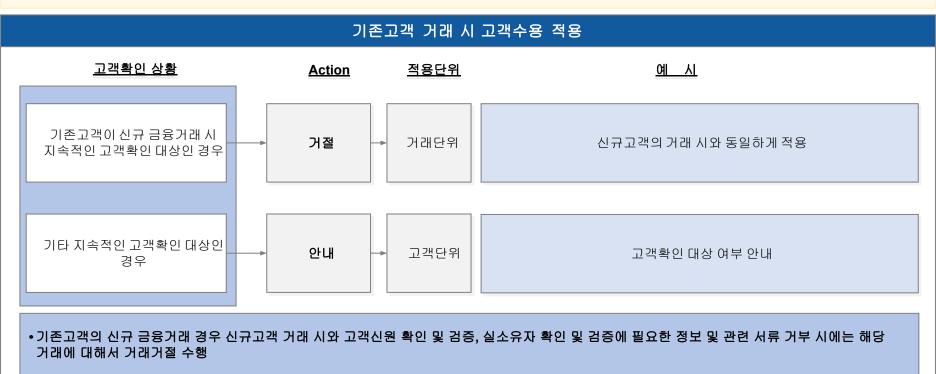
관련 법령 및 고객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의한 신규고객 거래 시 고객수용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고객 거래 시 고객수용 적용



기존고객 거래 시 고객수용

관련 법령 및 고객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의한 기존고객 거래 시 고객수용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객확인 대상인 경우에도 계속거래에 해당하거나 고객접점이 없으므로 기존고객에 대해서 고객확인 대상 여부만 안내

고객확인의무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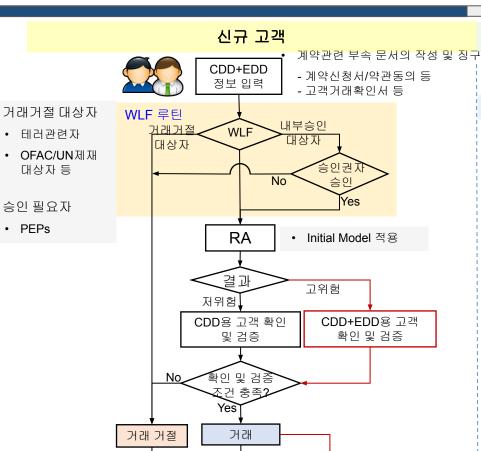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고객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규정 제 21 조 각 호	세부 설명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 국세, 지방세, 벌과금(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수납, - 전화요금(무선전화 포함), 전기요금, - 아파트관리비(병합고지된 국민주택기금의 원리금 및 대한주택공사의 임대료·융자상환금 포함), - 전화부가서비스료(정보통신사용료, 전화사서함요금), - 도시가스 요금(시설상환금 포함), - 유치원, 초·중·고·대학(원)생의 등록금 및 수업료(가상계좌 납부 방식은 제외), - 신문 구독료, 보험료, - 신용카드대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에 한함), -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등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자본시장법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중소기업진흥법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 자산관리공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법원공탁금,정부·법원보관금,송달료의 지출						
보험기간의 <mark>만료시</mark>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 발행권면 최고한도 5만원 이하인 전자화폐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회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 이하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적용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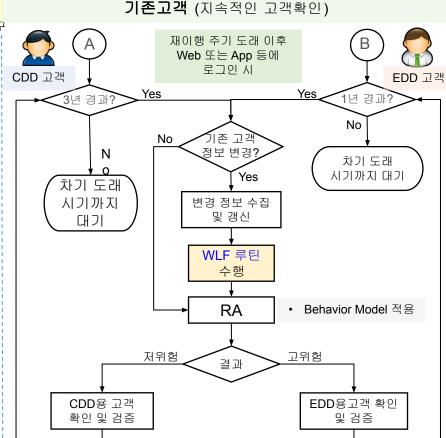
고객확인의무 이행

종료

절차 - 전체



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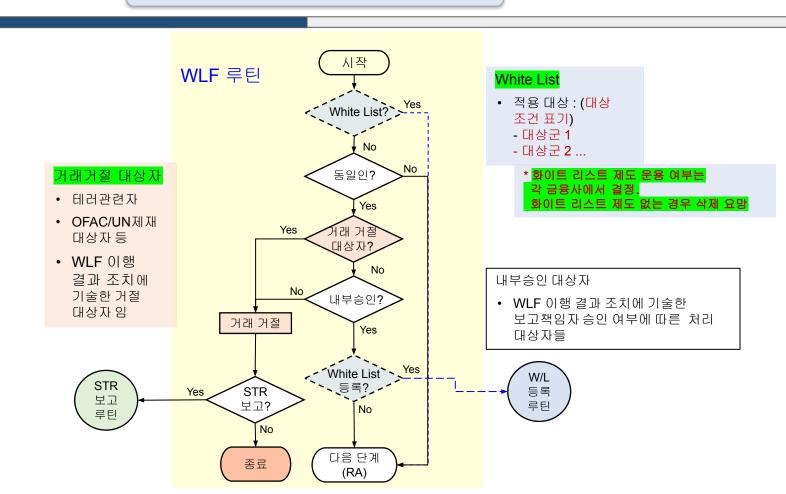


고객확인의무 이행

절차 - WLF 루틴 상세

WLF 업무 수행 루틴 상세 절차는 우측 흐름도와 같습니다.

WLF 업무 정책은 "WLF 지침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고객확인의무 이행

고객별 고객확인 적용 업무

고객 구분	대상 범위	WLF	CDD 정보 확인	CDD 정보 검증	위험평가 (RA)	EDD 정보 확인	고객확인 재이행
개인	거래 당사자 (본인)	0	0	0	0	Δ	0
기타	제3자에게 지급/정산	0	0		0	Δ	
	고객의 관계인 *	0	0	0	0	Δ	0

WLF: Watch List Filtering. 요주의 인물 대사

위험평가 : FIU업무규정 제3절에 따른 고객위험평가

CDD 확인 : FIU업무규정 제5절에 따른 고객 신원의 확인 CDD 검증 : FIU업무규정 제5절에 따른 고객 신원의 검증

EDD 확인 : FIU업무규정 제42조(추가 확인정보의 범위)에 따른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

기타 : 내규 제33조 5호의 기타 보고책임자가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대상

* 고객의 관계인 : 고객의 보증인, 담보제공자, 대위변제자 등 모든 관계인

개인

확인 및 검증 항목

구분	항목	개인 (자연 人)	비고
	성명	•	• 한국인 : 한글 명 + 영문 명
저위험	생년월일	•	
(CDD)	실명번호	•	• 개인 : 주민등록 번호 / 여권번호 / C I
모든 고객	주소	•	• 집 주소 또는 직장 주소 중 택 1이나 집 주소 추천 (확인 및 검증 절차에 따라 주소를 검증 서류 제출 시 편의성 감안)
대상	연락처	•	• 집/직장/휴대폰 번호 중 최소 택 1
	직업	0	• 개인 = 직업
그이딊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출처)	0	
고위험 (EDD)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0	• 예) 개인 : 직업이 근로소득자 일 경우 직장명, 부서명 , 직위, 직급 등 직장 정보
초고위험 (E-EDD)	추가확인 정보	0	 급여 소득자의 경우

개인

신원검증을 위한 징구 서류 및 방법

개인고객의 신원 "검증"을 위하여 고객으로 부터 징구하는 문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분류	1차 문서(실명확인증표)	문서적 방법(2차문서)	비문서적 방법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등 주소정보가 없는 여권 + 주민등록등(초) 본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신청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영수증 건강보험증, 인감증명서 회사명·직원의 이름 및 사진이 첨부된 사원증, 재직증명서 	1382 전화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경찰청 홈페이지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

간소화된 고객 확인 (SDD)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SDD 정의 (요건)	설명
FIU 업무규정 제20조 제1항 고객확인이란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FIU 업무규정 제20조 제2항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 외국인인 고객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라 한다)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 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SDD의 대상은 회사의 내규로서 정의할 수 있음. (업무규정 제20조 제2항 전단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내규로 정의) FIU 업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 중 고객신원확인은 생략할 수 없음. 그 외 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EDD 항목의 확인과 실제소유자 확인 등은 생략 가능 FIU 업무규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DD 적용 불가

간소화된 고객 확인 (SDD)

SDD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회사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상품 및 서비스								
정의	FIU 업무규정 제40조 제2항 ② 금융회사등은법인·단체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해 제20조제2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 (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고객 위험평가 결과 저위험 고객 중에서 SDD로 선정할 수 있는 고객 또는 고객군을 열거 없는 경우, 없음 또는 N/A로 표시 								
업무 처리	 가상자산사업자는위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속하기는 하나 (당연) 고위험 고객이므로 SDD 대상에서 제외함 위 제4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하는 기관 및 단체의 명단 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는 본 지침서의 별첨 리스트 참조 	SDD의 대상은 고객과 상품 및 서비스가 모두 저위험일 경우가 전제됨 즉, 저위험 고객이 저위험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객과 상품/서비스 중 어느 하나라도 저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SDD를 적용할 수 없음.								
해당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기관/단체 세부 내용은 "실제소유자" 부분 참조									

강화된 고객 확인 (EDD) - 요건 및 대상고객

강화된 고객확인의 정의와 대상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EDD 정의 및 요건	EDD 고객
FIU 업무규정 제20조 제3항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41조부터 제42조 및 제4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FIU 업무규정 제30조 제3항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EDD를 이행합니다. • 고객위험평가결과 고위험에 해당하는 고객 • 회사 자체적으로 지정한 고객 (RA평가 결과 무관) • 정치적주요인물 • (국내)비거주자 •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가상자산사업자, 귀금속 판매상 등 • 환거래계약 • 종합자산관리서비스고객 • 환거래 서비스 이용 고객

강화된 고객 확인 (EDD) - Filtering 방법 및 조치

EDD 고객 별 Filtering 가능 단계와 그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구분	Filtering(*)	RA 이행	위험 등급	조치 (**)	승인권자
당연 초 고위험	가상자산사업자	WLF/KYC	X	E-EDD	승인	보고책임자
당한 소 고기암	공중협박자금 조달 고객	WLF	X	E-EDD	거절/종료	
초 고위험	위험평가 결과	RA	0	E-EDD	거절/종료	
	환거래 고객	KYC	×	EDD	승인	보고책임자
	종합자산관리서비스고객	KYC	0	EDD	승인	보고책임자
당연 고위험	PEPs	WLF	X	EDD	승인	보고책임자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 및 거주자	WLF	Х	EDD	거절/종료	
	회사 자체 지정	WLF	X	EDD	거절/종료	
고위험 위험평가결과		RA	0	EDD		

* Filtering : 고객을 선별할 수 있는 단계

** 거절/종료 : 신규고객은 거래 거절, 기존 고객은 거래 종료

승인 : 보고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거래 개시/유지 또는 거절/종료 여부를 결정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내용 및 이행시기

실제소유자(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가 누구인지를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확인 내용	확인시기
 고객확인의무이행 대상과 동일 즉,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함. 	실제소유자의 • 한글+영문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와 동일 • 개인고객이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개인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 실제소유자 정보 변경 시 • 거래 대상 고객의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될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요건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개인/개인사업자 고객

① 금융회사등은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실제소유자의 정의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실제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원칙 및 방법

- 1. 개인고객은 기본적으로 고객과 실제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확인을 하며 실제소유자가 아닌 경우 거래 거절이 원칙이다. 그러나
 - 개인고객이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개인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에는 실제소유자를 확인 후 보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 2.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 거래신청서 상에 고객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
- 3. 직원이 질문을 통해 거래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음
- 4.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생략
- 현재 회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실제 본인소유)의 계약에 한해서 계약 진행
 - 그러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및 STR 보고 여부 검토 필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정의 및 업무 요건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고액자산가 고객)에 대하여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 법규 요구사항
규정	제3절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정의 및 관리 (61조)	①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함 ② 금융기관등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함 ③ 금융기관등은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여야함
강화된 고객확인 (62 조)	① 금융기관등은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② 금융기관등은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u>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신규로 편입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때</u> 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함 1.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 거래의 수용여부 등
모니터링 (63조)	① 금융기관등은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u>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u> 하여야 함 ②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u>금융거래</u>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함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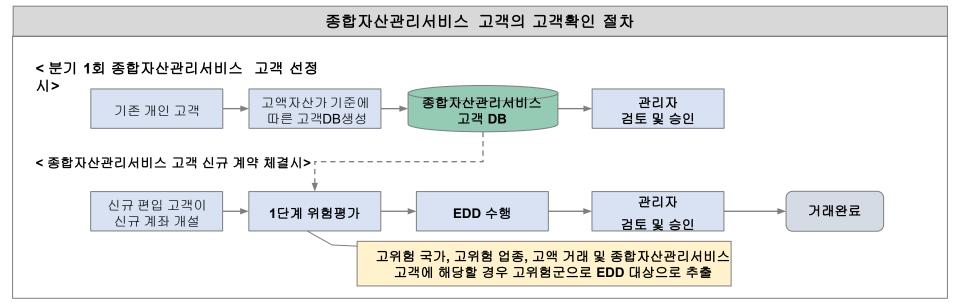
선정기준, 주기 및 고객확인 절차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관리를 위한 선정 기준, 주기 및 고객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자산가 관리 개선 방안

선정 기준 및 주기

- ✔ 선정기준: 개인 고객 중 매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고객
- ✓ 주기: 매월 1회 선정 (지표 상에서 분기 별 선정 권고)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거래모니터링 강화

거래 모니터링 시에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관련 거래를 추출하여 점검합니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방안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관련 Rule 신규 생성

✔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규 Rule을 생성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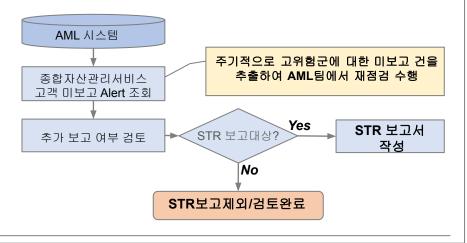
<Rule 예시>

- 1영업일 동안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이 5천만원 이상 입출금한 경우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거래 모니터링 결과 Alert 발생 건 중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추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운영

<추가 모니터링 절차>



별지 서식

제xx호 고객확인정보 제공 비협조 고객 관리 대장

일련 번호	발생 일시	고객 명	실명 번호	연락처	담당 직원	사인	보고 책임자	사인
001	9999-99-99 Hh:mm	ABC	999-99-99999	099-9999-9999	김 수한무		이 책임자	

별지 서식

제xx호 고객확인정보 제공 비협조 고객 상세 내역

일련 번호	001			
고객 구분	신규 고객		기존 고객	
	(회원 가입시/계약시)	[]	(재이행 주기 시)	[]
			(기타)	발생 시점 기록 (예: 의심되어 요청 시)
미제공 정보	한글 성명	[]	미제공 사유	구체적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 []
	영문 성명	[]		기타 : <i>(사유 기록</i>)
	실명 번호	[]		
	국적	[]		
	생년월일	[]		
	주소/연락처	[]	STR 작성여부	네[] 아니요[]
	직업/업종	[]	미작성 사유	아니요 선택 시 미작성 사유 기록
	자금의 원천	[]		
	거래의 목적	[]		
	실제소유자 관련 정보	[]		
	기타	[]		

별지 서식

제xx호 정치적 주요인물(PEP)과의 거래승인 신청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내규 <mark>제23조 (적용기준 및 적용 방법) 제3항 제1호, 제50조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mark> 에 따라 정치적 주요인물(PEP : Politically Exposed Person)과의 거래를 승인 신청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값		
신청일*		신청 부서*		신청 직원명*	*					
PEP 정보										
고객 번호		고객 명*	(영문 명)		금융 거래	당용 거래 목적*				
국적*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	'거소 번호)	거래 자금의 원천 (출처)*					
생년월일*		직업/업종								
주소*					검토 의견	및 승인 여부				
연락처*					영업점 검토의견					
이-메일					승인 결과* 승인 [] 불가 []					
PEP와의 관기	Й	(예: 가족, 친	인척, 직원 , 친	구 등)	승인 사유					